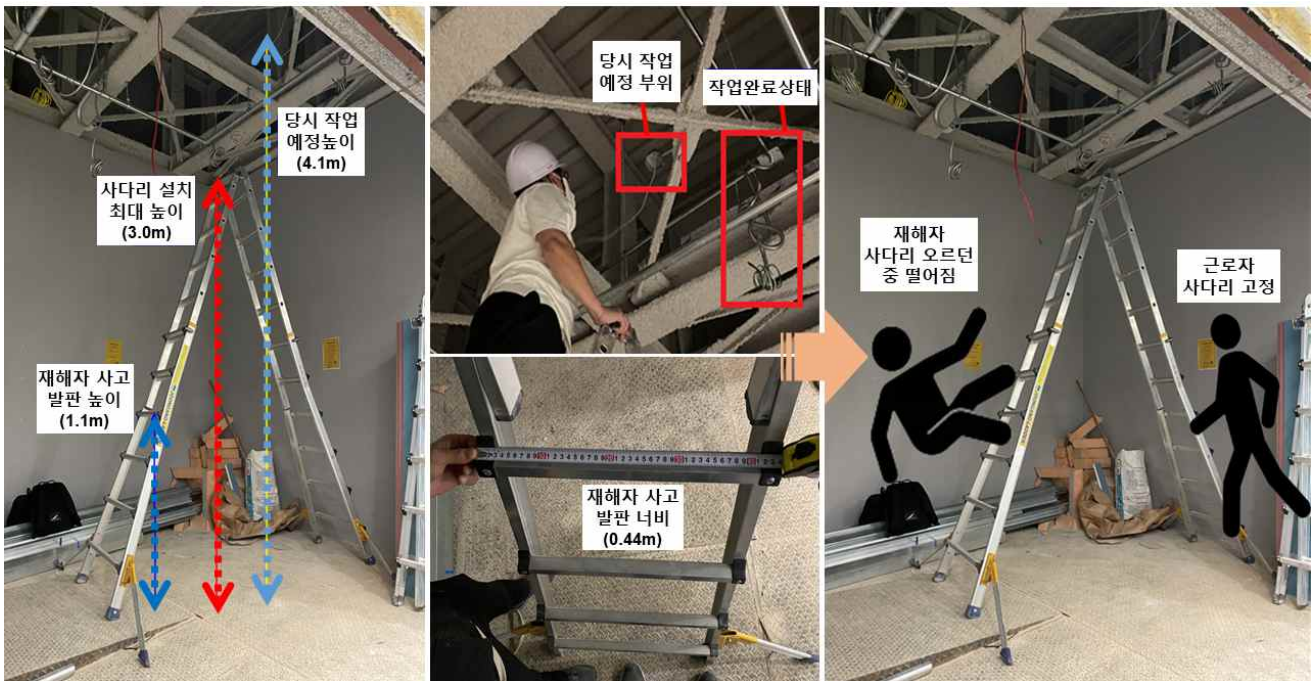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23. 5. 2.(화) 09:30경, 경기도 □□시 소재 「○○○」 현장에서 △△소속 재해자가 천장 유도등 박스에 금속제 가요전선관*(후력시블) 및 전선 매입 시공을 위하여 이동식사다리를 오르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1.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를 받아오다 2023. 5. 24.(수) 20:48경 사망함



재해 발생 원인

추락위험 방지조치 미실시

-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, 작업높이가 4.1m에 달함에도 이동식사다리를 사용하는 등 추락방호조치 미실시



재해 예방 대책

추락위험 방지조치 실시

- 사고 발생 장소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이동식 비계, 시스템 비계 등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